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환영할 만한 의무화, 그러나 아쉬운 추진 속도

람나쓰 N. 아이어(Ramnath N. Iyer), 허태욱(Taewook Huh)

주요 분석 결과

-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2027 회계연도(FY)부터 연결자산 10 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대상 기준은 FY2028 에 5 조 원으로 낮아지고, FY2029 에는 2 조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 한국의 현행 자율 공시는 신뢰성과 포괄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2025 년 보고 기업의 68%가 Scope 3 배출량을 공시했지만, 산정 방법론을 설명한 기업은 49%, 보고 경계나 근거 가정을 공개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연결기준 Scope 1·2 배출량 보고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 한국의 3 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은 일본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과거 데이터를 포함해 공시된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준다. 인증(assurance) 의무 역시 일본보다 한 해 늦게 시작되어, 한국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지속가능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견고한 측정 체계와 업종별 Scope 3 가이드라인, 확대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는 고품질 공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와 의무화된 녹색 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2026 년 7 월, 산업계·금융기관·이해관계자들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ESG\(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공시 제도화 방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제도화 방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지만,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데에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제도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조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금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의 자율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그대로 유지한다.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지속가능금융은 계속 제약을 받는다. K-택소노미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적용되며, 적격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 선별 기준도 부족하다. 또한 어떤 활동이 국가 기후금융 투자 목표나 [한국형 녹색 전환\(K-GX\)](#) 계획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효과가 불분명한

활동이 이러한 계획에 포함된다면, 녹색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K-GX 발행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이 제도화 방안을 한층 강화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논평에서는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세이프 하버와 인증 조항의 일본과의 비교, 그리고 지속가능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한국의 의무 공시 단계적 추진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자율적 공시에 의존하지 않고 단계적인 법정 공시 의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두드러진다. 기업은 2027 회계연도(FY)부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첫 대상은 연결자산이 10 조 원을 초과하는 코스피(KOSPI) 상장 기업이다. 이 기준은 FY2028 에 5 조 원으로 낮아지고, FY2029 에는 2 조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시아의 여러 공시 제도보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더 가깝다. 한국의 제도화 방안과 CSRD 는 모두 거래소 상장 규정이 아닌 법정 기업 공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발적인 검증에 의존하는 대신 의무적인 제 3 자 인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의무적 기후 공시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공시 기준을 통해 확립될 예정이며, 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정합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자산 기준과 보고 범위

구분	FY2027	FY2028	FY2029(잠정)	FY2030(잠정)
연결자산 기준(의무화 기준)	10조 원 초과 (약 USD7.41억)	5조 원 초과 (약 USD3.70억)	2조 원 초과 (약 USD1.48억)	2조 원 초과 (약 USD1.48억)
대상 기업(코스피 상장사)	107개사	157개사	259개사	259개사
종속 회사 수(범위)*	184개사	3,014개사	3,490개사	3,799개사
핵심 준수 지침	✓ 법정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			
공시 시점	✓ 금융 공시와 연계하여 시행			
3년 면책(세이프하버) 조항	✓ 2028~2030년: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 제재, 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제 조항 (FY2027~FY2029 데이터는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제3자 검증	✓ FY2029부터 2년 유예. 의무화는 FY2030부터 적용			
Scope 3 배출량의 단계적 적용 시기	✓ FY2030부터 3년 유예. 의무화는 FY2030부터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FSC).

주석: *종속 회사 수(범위)"는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 회사 수를 의미함.
미화(USD) 환산은 1달러 = 1,350원(KRW) 기준으로 계산함.

IEEFA

이러한 의무 공시는 기업의 ESG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제도화할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기후 영향을 측정하고, 이것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자율 공시 체제에서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KRX\) 2025 년 공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25 개 기업이 자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시가총액이 10 조 원을 넘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는 86%(58 개 중 50 개)가 이미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율 공시만으로는 신뢰성과 완전성을 갖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225 개 기업 중 종속회사 배출량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3 곳에 불과했다. 반면 개별(별도)기준 Scope 1·2 배출량은 거의 모든 기업(99%)이 공시했다. 가치사슬 관련 공시에서도 방법론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보고 기업의 68%](#)가 Scope 3 배출량을 공시했지만, 산정 방법론을 설명한 기업은 49%에 그쳤고, 구체적인 보고 경계나 산정에 사용한 가정을 공개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2021 년부터 2025 년 사이에 자율 보고 기업 수는 거의 세 배로 늘었지만, Scope 3 공시율은 66%에서 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결기준 Scope 1·2 배출량 보고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2024 년에는 7 개 기업, 2025 년에는 3 개 기업만이 이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는 자율 기준만으로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결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2026 년 3 월 국민연금공단(NPS)은 금융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보다 이른 시점에 더 광범위한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의무 보고를 FY2026 부터 시작하고 자산 2 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일정이 싱가포르와 일본보다 2~3 년 뒤쳐진다고 주장했다. 최종 제도화 방안은 후속 단계에서 더 낮은 자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첫 대상 그룹의 기준은 10 조 원으로 유지했고 시행 시기도 늦췄다.

한국과 일본의 세이프 하버·인증 조항 비교

국민연금공단이 유사한 아시아 역내 사례로 언급한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기준](#)은 인증과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비교 대상이다. 이 두 요소에 따라 공시된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지가 달라진다. 인증은 공시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독립적인 제 3 자가 검증하는 절차로, 재무 감사와 비슷하되 지속가능성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보고 관행과 데이터 시스템이 성숙해지는 동안, 특정 공시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제한한다. 대상은 주로 미래예측 진술이나 쉽게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3 년간 폭넓게 책임을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에는 미래예측, 추정치, 제 3 자에게서 얻은 배출량 데이터는 물론 초기 공시 기간에 공시한 과거 배출량 데이터도 포함된다. 새로운 유형의 공시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범위와 기간은 기업에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할 상당히 긴 유예 기간을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세이프 하버 조항](#)은 적용 범위가 더 좁다. Scope 3 배출량과 그 밖의 미래예측 추정치에만 적용되며, 방법론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일본은 인증 시점도 더 빠르다. 일본은 의무 공시가 시작된 지 1 년 후부터 인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2 년 후부터 요구한다. 일본의 첫 대상 그룹인 시가총액 3 조 엔(한화 약 25 조 9 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27 년 3 월 종료 회계연도분부터 보고를 시작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인증이 2029 회계연도(FY)부터 적용되며, 인증을 거친 첫 공시는 2030 년에 이뤄진다.

이와 같은 한일 간 비교는 한국이 이러한 기준을 설계하는 데 일본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였음을 보여 준다. 한국은 더 넓은 범위의 공시 정보를 더 오랜 기간 보호하면서, 독립적 검증은 한 해 늦게 요구한다. 그 결과 공시 제도화 방안이 자리를 잡아 가는 바로 그 시기에 투자자와 규제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에 더 오래 의존해야 한다.

공시를 통한 지속가능금융 지원 활용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고품질 공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측정 체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Scope 3 공시는 2030 회계연도(FY)로 유예되었고 고탄소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은 공시가 면제된다. 한편 15 개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과정평가 데이터 접근 네트워크](#)(GLAD) 체계와 정합하도록 1,000 건 규모의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배출량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ESG 보고는 더 폭넓은 지속가능금융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시 제도를 토대로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K-택소노미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나아가 K-GX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금융상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 측정, 데이터 인프라, 보고 체계에 중점을 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더 포괄적인 정보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관리하고, 배출 성과를 개선하며,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 당국과 한국 기업의 다음 과제는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지금은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의무화된 K-택소노미 및 더 분명한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지속가능금융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